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정상교 의원 등 6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도내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안 제2조, 제8조)
-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 규제 개선(안 제7조, 제8조의2, 제20조)
- 유리벽면을 이용한 벽면이용 광고물 수량제한 완화(안 제8조)
- 벽면이용간판 층수제한 완화(안 제8조)

- 가로등 현수기 규격 규정(안 제12조)
- 옥외광고발전기금 근거 마련(안 제30조 ~ 제32조)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의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을
    - 안 제7조, 제8조의2, 제20조에서는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 규제 개선을,
    - 안 제8조에서는 유리벽면을 이용한 벽면이용 광고물 수량제한 완화와 벽면이용간판 층수제한 완화를,
    - 안 제12조에서는 가로등 현수기 규격 규정을,
    - 안 제30조에서 제32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 근거 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끝.